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8일, 고민정 의원 등 3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5.9.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1차 교육위원회(2025.1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고민정 의원)

2025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
강한 성장과 발달,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종사자의 인력 부족 문
제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학교급식종사자
의 폐암 발병률이 높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종사자가 175명(2025.4 기준)에 달한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열악한 근로환경,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경비를 지원하며, 1인당 식수인원 기준을 수립하는 등 입법 조치를 하려는 것임. 이는 최근 학교급식종사자의 작업환경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자를 둘러싼 역할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시설·설비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학교급식법」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학교급식 종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1인당 식수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기존의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방식과는 달리 지역별·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정혜경 의원, 문정복 의원, 서지영 의원, 김태호 의원, 고민정 의원, 김문수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